

#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44
----------	------

2012년 10월 9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9월 2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8월 26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 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10월 9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건강실장 김경호)

- 가.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사무로서,
- 나. 특수한 전문지식과 전문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심·뇌혈관 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- 다. 주요내용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
- 위탁기간 : 3년(2013. 2. 11 ~ 2016. 2. 10)
- 사 업 비 : 연간 100백만원 (※ 2012년 100백만원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라. 주요 위탁사무

- 서울시민 심·뇌혈관질환 인식개선 사업
- 서울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관리사업 활성화 및 강화
-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사업 개발 및 수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(1) 동의안 제출 배경

-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 41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사무로서, 위탁기간(2011.7.27 ~ 2013. 2.10)이 내년 2월 초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,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(2)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

- 심·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, 고혈압·당뇨 등 선행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진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.

- 따라서 고혈압·당뇨·이상지질혈증·비만 등의 조절과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고, 심·뇌혈관질환 예방·관리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. 사업의 대상은 주로 서울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당뇨병, 고혈압, 고지혈증으로 진단 및 치료 중인 자와 보건의료체계 의료진(실무자)임.
- 민간위탁 근거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」 제4조제1항 등에 따른 것임.
- ‘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’의 위탁기간은 3년(2013. 2. 11~ 2016. 2. 10)이며, 주요 위탁업무로는 서울시민 심·뇌혈관질환 인식개선 사업, 서울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관리사업 활성화 및 강화,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사업 개발 및 수행 등임.
-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·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을 통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.
- 따라서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9월 2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사무로서,
- 나. 특수한 전문지식과 전문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심·뇌혈관 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 개요

-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
- 위탁기간 : 3년(2013. 2. 11 ~ 2016. 2. 10)
- 사업비 : 연간 100백만원 (※ 2012년 100백만원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### 나. 주요 위탁사무

- 서울시민 심·뇌혈관질환 인식개선 사업
- 서울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관리사업 활성화 및 강화
-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사업 개발 및 수행

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### 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

### 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8.8. 1 ~ 2008.12.31 (의료법인 강북삼성병원)
- 2차 : 2009.4. 1 ~ 2009.12.31 (의료법인 강북삼성병원)
- 3차 : 2010.7. 1 ~ 2010.12.31 (의료법인 강북삼성병원)
- 4차 : 2011.7.27 ~ 2013. 2.10 (의료법인 강북삼성병원)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 심·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·당뇨병환자에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
-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,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보건의료기본법 제 41조(만성질환예방 및 관리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

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기타사항 : 해당없음